

의안번호	2205672
의 퇴 인	문진석 의원
회 답 일	2024. 12. 6.
추 계 번호	24B519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4(구동축 전지 안전관리장치의 장착 등) 신설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치(이하 “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함.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통보하려면 사전에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1항) 1. 자동차 소유자 2. 소방청장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의4(구동축 전지 안전관리장치의 장착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 성능 향상 비용 지원(안 제29조의4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이상감지 통보기능은 충전·주차 중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제작사를 거쳐 차주에게 경고를 해주는 기능으로, 2024년 6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전기 승용·승합·화물차 중 BMS 이상감지 통보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전체 조사 차량의 73.14% 수준임

[표 1] 전기 승용·승합·화물차 BMS 이상감지 통보기능 탑재 현황 총괄표

(단위: 대)

구분	조사 차량 (전체 등록 대비 비중)	BMS 안전기능 탑재차량(비율)
전기 승용차	463,781 (99.93%)	330,169 (71.2%)
전기 승합차	8,816 (97.04%)	3,906 (44.3%)
전기 화물차	132,517 (99.68%)	108,479 (81.86%)
총계	605,114 (99.83%)	442,554 (73.14%)

자료: 국토교통부

- BMS 이상감지 통보기능 탑재를 위해 자동차 제작자는 차량의 BMS 이상감지 정보를 커넥티드(통신) 서비스를 통해 제작자에게 보내고, 문자 또는 전용앱 등을 통해 차주에게 통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게 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배터리 안전관리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배터리 안전관리장치의 성능 향상 방식은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 향상을 위해 하나의 특정 장치를 구입해 설치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고, 해당 BMS 시스템을 개발한 제작자가 장비나 시스템

등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자나 차종별로 BMS 이상감지
통보기능과 성능에 차이가 있고, 현 시점에서는 제작자별 성능개선 방법과
성능개선 단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